

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 개요

가. 사업 목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나.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다. 설치·운영 현황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개 시·도 모두 설치·운영 중임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 중임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

(‘18.1.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	232	25	16	8	10	5	5	5	1	31	18	12	15	14	22	23	20	2
구축	211	24	11	8	8	5	2	4	1	31	11	12	15	14	22	21	20	2
미구축	21	1	5	-	2	-	3	1	-	-	7	-	-	-	-	2	-	-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시까지 시·군·구로 분류 및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센터 설치·운영 권장

라. 기타 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제정 및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적용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에 적합하게 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정한 지방상담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단위로 시·군·구 센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음.

2 설치기준(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2)

가. 입지기준

-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함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 분		내 용
규모	시 도	• 연면적 400㎡ 이상의 독립된 공간
	시군구	•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공 통	• 1개 이상
상담대기실	공 통	•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공 통	• 1개 이상(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공동 사용 가능)
전화 등 상담실	공 통	•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위생시설	공 통	• 종사자 수 및 이용자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구 분		내 용
사업실	공 통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교육실	공 통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개인상담실	시 도	•5개 이상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시군구	•3개 이상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일시보호소	시 도	•남성용·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다. 운영기준

- 시·도 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군·구 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단, 시·도 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군·구 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도 및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 단, 지자체가 센터를 직영하더라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을 권장함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수탁받아 그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
 - ※ 청소년시설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라. 종사자의 자격기준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센터의 장 (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수행 직원 (팀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팀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행정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생활지도 직원 (일시보호 시설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센터의 장 (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수행 직원 (팀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팀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마. 안전기준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피난, 연소방지 시설 및 물품 구비 등 소방안전시설 기준 준수
-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출 것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 대책 마련
- 긴급수송 종사자 및 수송대상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일시보호시설은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센터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대응매뉴얼 작성 관리, 모의훈련 실시
 - * 안전관리 책임자는 센터장 또는 팀장으로 지정
 - * 모의훈련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 자체 안전대응매뉴얼은 현장상황에 맞게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제반 사항 포함
- 시설 노후, 하절기 태풍 및 수해, 동절기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3 운영 유형

가. 직 영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조례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

나. 법인 설립·운영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설립 시 지자체 또는 법인단체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며, 상담복지센터 인력을 법인 인력으로 대체 할 수 없음
- 지자체에서 법인 설립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팀 등으로 변경하고 센터의 장을 그 팀장으로 명칭 변경할 수 없음

다. 위탁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2, 시행규칙 제22조
- 선정
 - 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이 청소년단체¹⁾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 단체, 지자체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방법 : 공개모집
 - 절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행규칙 제22조)

- 위원회 구성 및 자격 요건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래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
 -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의 운영
 -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함

- 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 위탁 계약 기간
 - 위탁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탁 계약 내용
 -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유의 사항
 - 센터 종사자는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직할 수 없음

4 센터 명칭 및 로고

- 센터명칭은 시·도 센터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시·군·구 센터는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앞에 시·도명을 쓰지 않더라도 해당 시·군·구를 특정할 수 있는 시·군·구 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도명을 제외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 센터는 건물 외벽에 정확한 센터명칭을 포함한 현판 부착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전략체계

- 각 센터별로 예시자료 참조하여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각 센터별 전략체계 수립(예시) ■

미션	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한 ○○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실현	
비전	○○시 내 청소년지원 중추기관	
목표	위기지원 강화	상담복지서비스 확대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대응강화 2. 지역 내 청소년기관 연계강화 3. 조기발굴 체계강화 4. CYS-Net 운영조직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부모 등 상담 내실화 2. 상담복지인적 전문성 강화 3. 지역 내 청소년 동향 분석 및 연구역량 강화 4. 특성화 사업 확대 운영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도센터는 시·군·구센터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광역 지자체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CYS-Net사업 추진
 - 시·군·구센터에 대한 성과관리 점검 및 지역 내 보고체계 관리
 - 시·군·구센터에 대한 컨설팅 : 계획수립, 결과보고, 피드백
 - 시·군·구센터 역량강화 지도지원 : 교육, 연구 등
- 시·도 권역별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본 지침 “라. 지역사회내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참고)
 - 권역별 심리지원 인력 양성 및 관리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사업수행
- 필요시 자체 지역별 특성화 사업 개발, 운영 등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구센터는 위기 등 청소년에 대한 직접사업을 수행하며 위기청소년 발견, 서비스, 지역자원연계에 대한 업무수행
-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본 지침 “라. 지역사회내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참고)

- 기타 시·도센터 의뢰 및 협조요청 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사업수행

청소년복지사업수행 법적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필요시 자체 지역별 특성화 사업 개발, 운영 등

지역 특성화 사업 (예시)

- 비행 영역 : 청소년폭력예방 및 가·피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
- 후기청소년 영역 : 군장병, 대학생 상담센터 연계, 무업청소년 발굴, 지원
- 진로·인성영역 :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인성교육
- 계층, 지역특성 영역 :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군인 자녀 등
- 정책사업 영역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가능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 구성

가. 공통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 단, 지자체가 센터를 직영하더라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을 권장함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수탁받아 그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

※ 청소년시설 :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 센터의 장을 중심으로 개별 업무 수행을 위한 복수의 전담 조직(팀, TF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전담 조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필수연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어 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등에 관한 실무사항 협의

나. 시·도 센터 인력구성

- 센터의 장 1인을 포함, 14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센터별로 3명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²⁾
 - ※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
- 센터 종사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센터의 장’, ‘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행정업무 수행직원’, ‘생활지도 직원’으로 하되,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 ‘생활지도원’으로 통칭 가능함

다. 시·군·구 센터 인력구성

- 센터의 장 1인을 포함,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센터별로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
- 센터 종사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센터의 장’, ‘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으로 하되,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통칭 가능함
 - 다만, 구성인력 외의 인력(행정원 등) 채용 시 자격기준은 시·도 상담복지센터의 기준을 준용함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관련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참조

가. 종사자 채용

○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함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

- * 시·도 및 시·군·구 또는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 가능
- * 직원 채용시 이력서 상에 가족사항, 취미, 종교, 신장, 체중 등 과도한 개인정보의 내용 요구 금지
- 센터 인사위원회³⁾를 구성·운영하여 종사자 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시 객관성·타당성 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 운영(안)】

- (구성) 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
 - * 단, 외부위원(지자체 및 수탁법인 등 관계자 제외)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심의 사항) 종사자 인사관리 및 복무, 징계 등에 대한 제반사항

○ 센터장은 직원 임명 후 “직원증” 발급 **【서식15】**

○ 팀장, 팀원 결원 보충 시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려

- 팀장을 팀원에서 선발할 경우, ‘승진’으로 간주함
- 팀원을 기존의 행정원 또는 생활지도원에서 선발할 경우, 팀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임
- 센터의 장⁴⁾은 기존 종사자 및 신규 채용자⁵⁾ 일정기간 동안 센터를 내방하여

3)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업 수탁 기관(지자체 또는 위탁 단체)은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해야 함

유·무급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찰청에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구축함에 따라, '15년 1월부터 관련 서류의 인터넷 발급 가능함(☎ 18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취업예정자가 아닌자(예, 최종 취업이 확정 되지 않은 1차 서류 합격자 등)에 대해 구비서류 등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요청하지 않도록 하며, 최종 취업예정자를 확정된 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예정)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제출불가

* 참고 : 서식 10, 11, 12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4. 9. 29. 시행)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지자체 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 센터장은 센터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함.(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 참고 : 서식 13, 14

○ 직원 정년 : 만 60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5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운영 인력 종사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4) “센터의 장”의 “성범죄경력조회”는 해당 지자체(법인은 법인대표)가 실시함

5) 직원 채용 시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작성 비치

하여 고용 불안정 해소

- 또한, 이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과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중 다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 적용

나. 보수

(1) 보수체계

○ 기본방향

- 지자체는 각 년도 센터 종사자의 보수를 책정할 때, 지역 간 임금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 대비 2.6% 인상(하후상박 적용)

○ 보수의 구성 및 지급방향

-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
- 각 지자체는 종사자 임금 지급 시 【별표 2】 「기본급 기준표(예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기본급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구 수,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편성 가능. 단, 조정 시 【별표 2】 기준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지자체는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연봉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지침의 기본급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연봉수준을 결정
-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자체 규정,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예시) ■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연 기본급 120% 내외 • 설, 추석에 있는 달의 보수지급일에 2회로 나누어 지급 가능
가족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초과근무수당	• 월 57시간(1일 4시간 이내) 한도 내 지급가능 - 초과근무내역 작성관리 및 고의적 부당 수령사례 방지 감독 철저 -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출
기타 제 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등(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령에 따른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보수에 포함됨

- 가족수당 등 기타 제수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편성 및 지급가능
 -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12.7.27.)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 권고
 - 생활지도원의 연봉은 직무 난이도, 전문성, 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하되, 최저 월급은 1,573,770원(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 이상) 이상 설정

○ 기타 휴직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에 의한 보수지급은 상담복지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2018년 보수수준이 2017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행

(2) 호봉의 획정 및 재획정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경력 인정】

- 경력인정의 범위는 **【별표1】**의 「경력산정기준표」에 의함
-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근무기간의 퇴직(전역)일이나,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권한 있는 자(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 증명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로 대체 가능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3월 이내 완료하도록 함
 -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의 조회는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초임호봉의 확정 및 재확정 방법 ■

종 류	초임호봉 확정	재 확 정
대 상	센터에 신규 채용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확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기존 호봉에서 1호봉을 낮추어 책정
시 기	신규채용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확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확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확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확정하는 경우는 재확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 확정함
확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함 • 추가 인정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확정 • 호봉 확정에 미 반영된 1년 미만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다음 승급에 산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임호봉 확정 방법에 준함 • 재확정에 미 반영된 기간은 그 기간만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최고 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초임호봉 확정시 경력의 증빙 자료 미제출시 경력 소급 불가

(3) 승 급

-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호봉을 승급함
 - 정기 승급일 도래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 정기승급일은 매달 1일로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함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⁶⁾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복무관리

- 상근의무
 -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임
 - 다만,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근무시간 적용 가능
 - * 주5일 수업에 따라 청소년의 토요일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영리업무 겸직 불가
 - 센터장과 직원은 근무시간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6) 승급제한 기간 등은 징계관련 사항등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규정 내 명시하여야 함

영리업무의 판단기준

-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월평균 12시간)를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 등 포함
 - *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발표·토론하는 경우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센터장 또는 센터 종사자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겸직할 수 없음
- 센터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에서의 강의·발표·토론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센터장이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 특히, 개인적으로 석·박사 과정 이수를 위한 출·수강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승인(※ 센터장은 지자체의 사전승인) 을 받아 휴가를 활용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근, 지각 등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일수 및 시간 만큼 인건비를 감액 지급

○ 신고의무

- 직무상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부터 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은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 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 시도 센터 운영 유의사항
 - 청소년전화 1388, 긴급구조 실시 및 일시보호시설 제공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 생활지도원은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공익근무요원은 일 3교대 원칙으로 하고, 운영 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기타 사항
 - 복무 관련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지침, 자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함
 - ※ 휴직의 종류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센터의 인력현황 등을 고려,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교육
 - 모든 직원(센터장 제외)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슈퍼비전 제외)을 이수해야 함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센터 주관 직무연수 및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이력연수 등(주관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경우만 인정함).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2에 따른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 포함함
 -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교육을 연간 5시간 이상 이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센터 종사자 교육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록 :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에 대상자 등록
 - 보수교육 일정 공지 및 신청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중 일정공지
 -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 (☎ 051-662-3083~3084)

5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7)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할 것

-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규 종사자(행정원 제외) 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함.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러닝연수 과목 중 “CYS-Net 종합정보망의 이해(4시간)”와 “1388청소년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4시간)”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 센터는 소속 종사자(생활지도원, 긴급구조요원 뿐만 아니라 CYS-Net, 청소년동반자 등 사업 관련 인력 포함)를 대상으로 아래의 교육을 반드시 총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8)
 - 아동학대 예방교육9)
 - ※ 해당 교육은 업무관련 교육 15시간과는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상담사 자격증 취득 노력
 - 시·도 및 시·군·구 센터장은 직원의 청소년상담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및 종사자 징계

가. 센터장의 면직

- 센터장은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면직(직영하는 경우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름)
- 센터장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9)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가능

나. 직원의 면직 및 징벌

- 지자체(또는 위탁법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자체 징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센터 내 징계 규정이 없을 경우 직영 또는 위탁법인의 징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 각 센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단, 센터장은 직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센터장은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징벌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 및 현장점검

가. 평 가

-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를 3년마다
실시¹⁰⁾함
 - 2017년 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및 우수 센터 현황 공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 2017년 센터 평가결과 미흡·부진 센터를 대상(의무대상)으로 2018년 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며, 희망센터 및 '17년 신규개소('18년 개소 예정) 센터도 참여하여야 함.
 - 또한, 2017년 센터 평가결과 미흡·부진 센터의 지자체는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할 계획임
 - ※ 지자체의 세부 개선계획 수립(안)은 '18년 1분기 중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공문 송부
예정임
-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기관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
 - 지자체는 위탁운영기관 종료이전에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를 참조 활용
- (지자체) 지자체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자체 평가 실시 가능
 - ※ 지자체별 평가 시 여성가족부 2017년 센터 평가지표 참조 요망

1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나. 현장점검

○ 목적

- 지자체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지자체별 자체 현장점검

- (주체) 시·도 및 시·군·구
 - ※ 단, 시·군·구 직영 센터는 시·도가 현장점검을 진행하여야 함
- (대상) 시·도 센터 및 시·군·구 센터
- (점검횟수) 센터별 연 1회 이상
- (점검기간) 3~6월
 - ※ 단, '18년 하반기 개소 센터는 개소 후 3개월 내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함
- (점검내용) 센터 운영 및 사업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인력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점검세부기준(안)은 '18년 1분기 중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공문 송부 예정임
- (점검결과) 시·도에서 시·군·구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 '18.7.30.까지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 합동 현장점검

- (주체) 여성가족부, 시·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대상) 신규 센터, '17년·'18년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센터, 민원 다발 센터 등
- (기간 및 횟수) 상·하반기 필요 시 실시

○ 기타

- 센터는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점검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센터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가능

가.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나. 항목별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CYS-Net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 보유기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 및 파기
 - CYS-Net 등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지원 종결 후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함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 CYS-Net 등 위기청소년과 관련 취득한 정보는 CYS-Net 종합정보망에만 입력·관리
 -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및 수집 목적 외 이용을 할 수 없음

-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 되는 것
 - 개인정보 수기문서를 전달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
- ※ 목적외 이용 :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서 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닌 목적외 이용에 해당함

참 고 목 적 외 이 용 사 례

- ◆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한 경우
- ◆ 조세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사람에 관한 납세정보를 조회하여 소송에 이용한 경우
- ◆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키값으로 이용한 경우
-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의 별도 상품·서비스의 홍보에 이용
-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우송하거나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공개된 목적을 넘어 DB마케팅을 위하여 수집한 후 이용하는 행위

참 고 목 적 외 제 공 사 례

- ◆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홍보 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 회사에 제공
- ◆ 홈쇼핑 회사가 주문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콘도 미니업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기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CYS-Net 등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은 반드시 암호화 처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해야 함

(4)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지정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CYS-Net 등 위기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관리 등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한정

다. 행정사항

-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센터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과 CYS-Net 실적을 별도 분리하여 입력할 것
 - ※ CYS-Net 정보망에 실적 입력 관련 세부내용 및 성과지표는 별도 통보

12 행정사항

- 센터 설치·운영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특히, 센터 신규 설치 및 위탁기관 변경시 여성가족부로 즉시 공문 송부 필요
 - 센터 설치기준(구조 및 설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센터장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주요 변동사항(위탁기관 변경 포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센터 운영 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법인·단체는 기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를 적극 활용
-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예산 축소 또는 미반영시 CYS-Net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만 CYS-Net 사업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음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경력산정기준표

직종별	구분	경 력	환산비율
전문상담원 · 생활지도원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상근)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상근11)) ○ 군 의무복무경력 ○ 청소년 동반자 근무경력12)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100%
	“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상담관련 근무경력(상근)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80%
	“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 사설상담기관의 상담원 근무경력(상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시설에서 상임임시직·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경력 	50%
행정원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행정업무실무 경력(상근) ○ 군 의무복무경력 	100%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보급업무처리지침 【별표 5 ‘호봉 확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을 말함

- 11) ‘상근’의 의미는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2) 전일제 청소년동반자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시간제 동반자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 다음의 기준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18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단, 조정시 가이드라인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구분	소장(상근)	팀 장	팀 원	행정원
1호봉	2,100,810	1,787,620	1,650,550	1,573,770
2호봉	2,162,810	1,852,620	1,675,550	1,598,770
3호봉	2,224,810	1,917,620	1,710,550	1,633,770
4호봉	2,286,810	1,982,620	1,765,550	1,668,770
5호봉	2,348,810	2,047,620	1,830,550	1,703,770
6호봉	2,413,810	2,109,620	1,890,550	1,743,770
7호봉	2,478,810	2,171,620	1,950,550	1,783,770
8호봉	2,543,810	2,233,620	2,010,550	1,823,770
9호봉	2,608,810	2,295,620	2,067,550	1,863,770
10호봉	2,673,810	2,357,620	2,124,550	1,903,770
11호봉	2,743,810	2,417,620	2,181,550	1,943,770
12호봉	2,813,810	2,477,620	2,238,550	1,983,770
13호봉	2,883,810	2,537,620	2,292,550	2,023,770
14호봉	2,953,810	2,597,620	2,346,550	2,063,770
15호봉	3,023,810	2,657,620	2,400,550	2,103,770
16호봉	3,091,810	2,713,620	2,452,550	2,143,770
17호봉	3,154,810	2,769,620	2,504,550	2,183,770
18호봉	3,217,810	2,821,620	2,556,550	2,223,770
19호봉	3,277,810	2,873,620	2,606,550	2,258,770
20호봉	3,337,810	2,921,620	2,651,550	2,293,770
21호봉	3,392,810	2,969,620	2,691,550	2,323,770
22호봉	3,442,810	3,013,620	2,731,550	2,353,770
23호봉	3,487,810	3,057,620	2,771,550	2,383,770
24호봉	3,529,810	3,097,620	2,809,550	2,408,770
25호봉	3,571,810	3,137,620	2,847,550	2,433,770
26호봉	3,613,810	3,177,620	2,885,550	2,458,770
27호봉	3,655,810	3,217,620	2,923,550	2,483,770
28호봉	3,697,810	3,257,620	2,961,550	2,508,770
29호봉	3,739,810	3,297,620	2,999,550	2,533,770
30호봉	3,781,810	3,337,620	3,037,550	2,558,770

* 호봉승급분은 지자체에서 부담

II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1 개요

가. 목 적

-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 안전망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

나.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다.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 지자체는 CYS-Net가 지역 단위 컨트롤 타워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다수 기관의 관여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도 CYS-Net가 중심이 되어 우선 지원 및 사례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연혁

구분	주요내용
'0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위원회 출범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 주요정책과제로 추진 •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0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시·도 시범 운영(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남)
'0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 상정(5.1) •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지자체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훈령 제정
'0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S-Net에 관련기관 의무가입·협조토록 총리훈령 제정, 전문상담교사 미배치·Wee센터 미설치 지역의 학생은 교육청에서 CYS-Net으로 연계 및 우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CYS-Net과 Wee센터간 협력 강화
'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공포·시행('09.11.27~) ☞ '12.8.2 폐지(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12.8.2 시행)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적근거 마련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대응 강화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운영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 2015.5.29. 시행)

마. 현황

○ 연도별 CYS-Net 구축현황

(단위 : 개소)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15년	'16년	'17년	'18년
사·도	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사·군·구	-	52	65	81	150	170	174	180	184	206	208	210
합계	5	68	81	97	166	186	190	196	200	222	224	226

○ 2018년 시·군·구 CYS-Net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	232	25	16	8	10	5	5	5	1	31	18	12	15	14	22	23	20	2
구축	210	24	11	8	8	4	2	4	1	31	11	12	15	14	22	21	20	2
미구축	22	1	5	-	2	1	3	1	-	-	7	-	-	-	-	2	-	-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시까지 시·군·구로 분류 및 지원

바.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8년 목표치
CYS-Net 서비스 효과성*	서비스 이용 전·후 위기수준변화율	20.5% 이상
CYS-Net 수혜청소년 만족도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측정	86.2% 이상
CYS-Net 개별지원 실적	사례당 개별지원 건수 (개인상담+사업수행프로그램+심리검사 +지원서비스+기타)	12건
CYS-Net 연계실적	필수연계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연계 및 협업 지원 건수	자체

※ 각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CYS-Net 종합정보망을 통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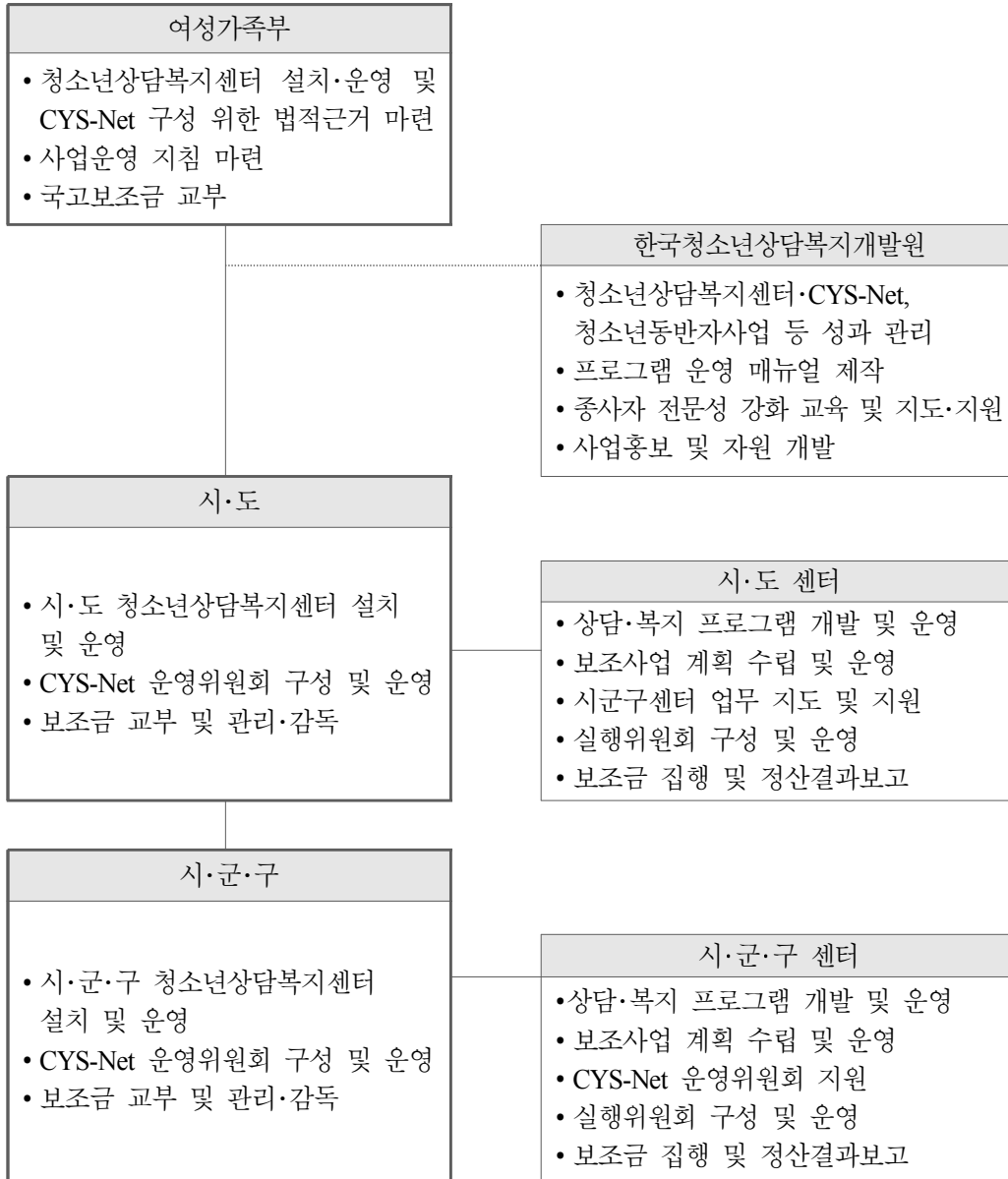
사. 운영방향

-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YS-Net 구축 의무 사항이나 미운영 시·군·구가 있으므로, CYS-Net 운영 확대 필요
 - CYS-Net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필수연계기관서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 및 협업요청이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야 함.
-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로 CYS-Net 유입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
 - 특히,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수혜자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를 통해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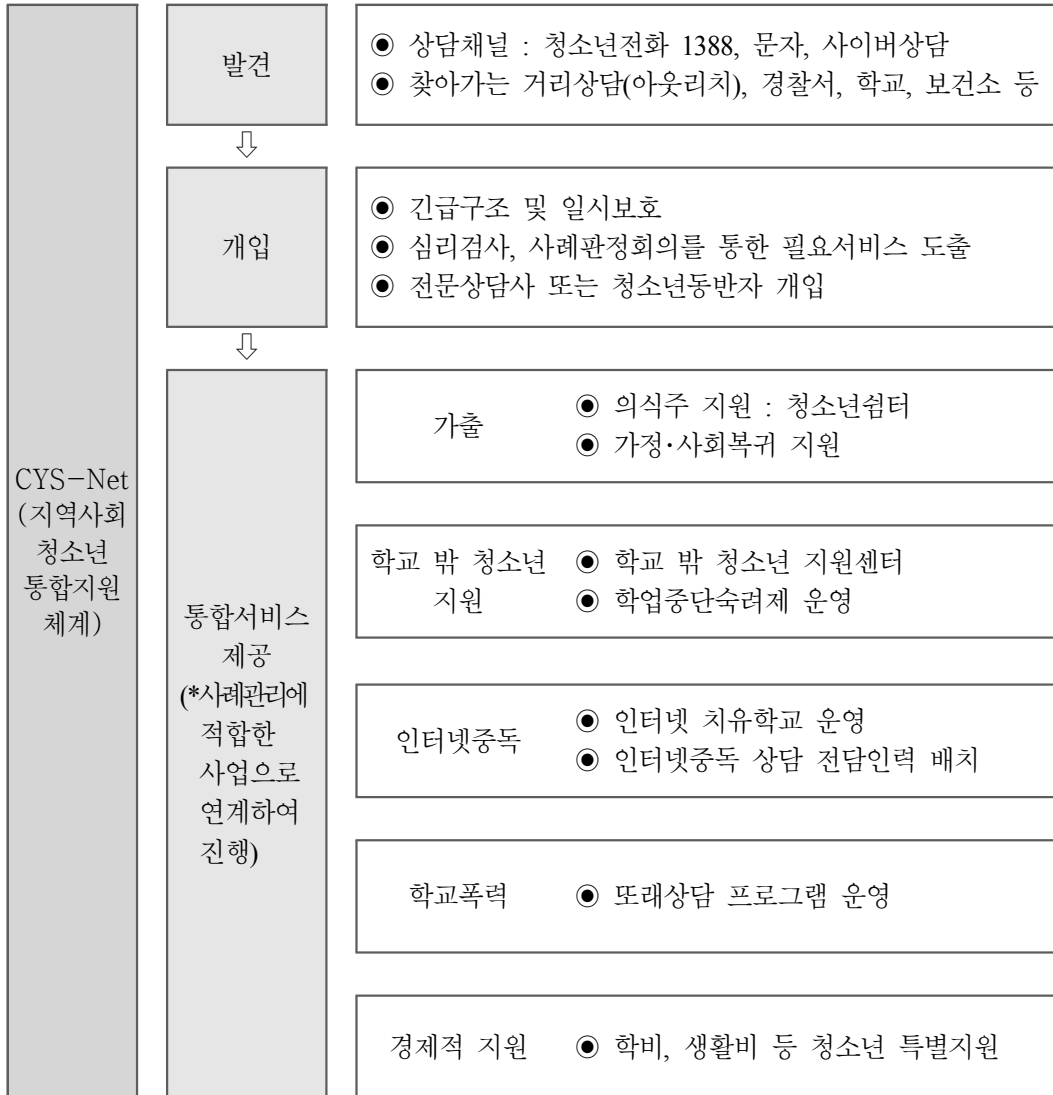
- CYS-Net 이용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필수연계기관 (국립의료원, 보건소 등) 및 1388청소년지원단 중 「의료·법률 지원단」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지원 추진

아. 추진 체계

-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 CYS-Net 운영 체계



【연계 및 지역자원】

- ① (필수연계기관)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시설 등
- ② (1388청소년지원단)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원활히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조직
- ③ (학교지원단) 학교에서의 지원 센터 상담 의뢰 활성화

2 CYS-Net 구성

가. CYS-Net 구성

1) CYS-Net 필수연계기관의 정의

-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CYS-Net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 기관(1차 연계망)이 되는 공공기관

2)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역할(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4조제4항)

- 지역별 연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에서 협약한 필수연계기관은 시·군·구 센터에서도 CYS-Net 연계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역할 ■

기관명	주요역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CY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행정 협력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기관으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 수행 ○ 특히, 교육청·각급 학교, 경찰관서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해야 함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인계받아 일시,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기 관 명	주 요 역 할
각급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 ○ 가정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인근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일시보호소 또는 청소년쉼터로 대상자를 인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 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뢰 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취업사관 학교, 직장체험 등 청소년의 여건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건강진단이나 신체적 질병 등으로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비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사업비나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등으로 부담하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와 국공립 병원 간 업무 협약을 통하여 건강진단, 진료·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가능 ○ 보건소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비용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의뢰하는 경우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필수연계기관의 연계절차

- 상담복지센터는 교육청(지원청), 각급 학교, 경찰관서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등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 연계절차
 - 필수연계기관이 상담복지센터로 의뢰 시 먼저 본인이나 보호자의 연계 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서식1】의 「서비스 연계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 1부는 상담복지센터로 송부
 - 청소년이 연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전화 1388 및 상담복지센터의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
- 상담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취업·의료·보호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노동관서·국공립병원·보건소·청소년쉼터·청소년지원시설 등 필수연계기관으로 서비스 의뢰

4)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 강화

-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도모해야 함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등)
 - ※ 정보공유 및 업무 효율성 배가를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CYS-Net 운영위원회 교차 참여
 - 청소년성문화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 보호관찰소, 법원 등

나. CYS-Net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CY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YS-Net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¹³⁾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YS-Net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관할 지역에 청소년관련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자치단체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위촉 위원 중 1인을 호선)을 각 1인으로 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음
 - 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당연직¹⁴⁾),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으로 대체 가능),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각 1인으로 구성함

3) 운영위원회의 역할

-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1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775(2013.3.15)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 규칙 표준안」 [참고1] 참조

14) Wee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Wee센터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음. 학교폭력 노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지원 연계강화를 위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며, 자체 규정에 의해 구성할 경우에도 구성인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CYS-Net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실행위원회의 정의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

2) 구 성

-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하에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상담복지센터장), 부위원장(위원 중 1인 호선) 각 1인을 두며, 사무처리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음
-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실무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함

3) 역 할

-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유용성 평가
-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4) 실행위원회의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사례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 가능
 - * 상담복지센터 내부 관계자만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실행위원회 회의를 대체할 수 없음
- 사례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 실행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담당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회의 개최시마다 적당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비고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가급적 고정 운영토록 함
-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실행위원회 위원은 상담복지센터장이 위촉함

라. 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지원단의 정의

-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

2) 구성 및 운영

- 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의 자체 규정에 의함
-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원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속 운영 가능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1) 1388청소년지원단의 정의

- CYS-Net의 일부분으로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

2) 구 성

○ 참여대상

- 지역사회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

* 필수연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지자체(주민센터 포함), 교육청(학교),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청),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등), 국립의료원(보건소 포함),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등은 제외

○ 하부지원단 분류체계

- ‘발견·구조’, ‘의료·법률’, ‘복지’, ‘상담·멘토지원’으로 표준화하여 관리

* 지역 상황에 따라 각 하부지원단에 연계기관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하부지원단 분류체계 및 성격 ▣

하부지원단	구성 현황
발견·구조	운수업체, 목욕장업체, PC방 등 청소년을 발견하여 연계하는 기관
의료·법률	병·의원, 의사 개인, 약국, 의료단체 등 약품·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법률회사, 변호사 개인, 변리사 등 ※ 보건소, 국립의료원, 지자체 운영 정신보건센터 필수연계기관으로 이동
복지	- 복지관, 푸드뱅크, 후원사연결 등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자립지원관, 직업훈련지원, 취업지원, 학습지원, 경제(후원)지원이 가능한 기관
상담·멘토	- 학부모, 또래, 전문직, 대학생, 상담자원봉사자 등으로 개인적 지지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

3) 역 할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에 관한 사항
-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 (센터 통합지원 종결 후 결연·후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운 영

- 반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
- 지원단장은 위원 중 1인 호선으로 정함
- 지원단 위촉절차
 - 희망기관·단체·개인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관 단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 (지자체) → 심사 후 결정여부 통보(지자체) → 위촉장 수여(지자체장)
 - * 1388청소년지원단 희망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센터에서 대리 가능하며, 지원단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5) 현황 및 실적 관리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매뉴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참조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 위기청소년 발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채널(청소년전화 1388, 모바일문자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

청소년문자상담 및 사이버상담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세부 내용) 청소년전화 1388 이외에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사이버상담(채팅, 게시판, www.cyber1388.kr) 및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카카오톡 상담 운영
 - ※ 여성가족부 위탁 사업으로 운영
 - * '14.7월부터 운영 중이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이용가능
- (CYS-Net과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CYS-Net을 통한 대면 상담 대기일수가 길어질 경우 문자·사이버 상담 안내 요망
 - * 사이버, 문자상담 이후 내방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운영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내담자 동의 후) 받아 심층상담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지원

- 필수연계기관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연계
 - 경찰서 등 필수연계기관으로부터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CYS-Net의 통합 서비스 제공
 - ※ 지역내 쉼터 등 아웃리치를 실시할 경우 연계협력 강화할 것
- 1388청소년지원단 「발견·구조지원단」 연계
 - 운수업체, 목욕장, PC방 등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CYS-Net의 통합 서비스 제공

2) 일시보호소 운영(시·도만 해당함)

- 보호대상
 - 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가능)청소년(만 9세~만 18세)¹⁵⁾

15)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다른 서비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일시보호

* 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 타 기관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기간

- 입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¹⁶⁾가 있는 경우 최고 1주일까지 보호 가능

○ 입소 시 인적사항 확인

- 서비스를 제공(의식주 제공, 긴급지원 등)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령, 연락처 등 주요 인적사항을 확인 관리
- 청소년의 동의 하에 보호자에게 연락함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입소를 거부할 경우 센터 일시보호소 운영일지 등에 행정사항*을 별도 기록·관리하되, 관련 기관 연계 등에 만전을 기해 위험에 방지되지 않도록 유의

* 입소 의뢰사실(일시, 기관명, 담당자, 의뢰내용 등), 입소 거부 사유 등

※ 입소 거부 사유(예시)

-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입소의뢰된 경우 등 다른 입소자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전염성이 강한 질병보균자,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다른 입소자와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 남녀동반 입소(남녀 구분된 일시보호소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일시보호소를 미운영하는 지역의 경우 청소년쉼터(일시, 고정형)과의 통합운영 등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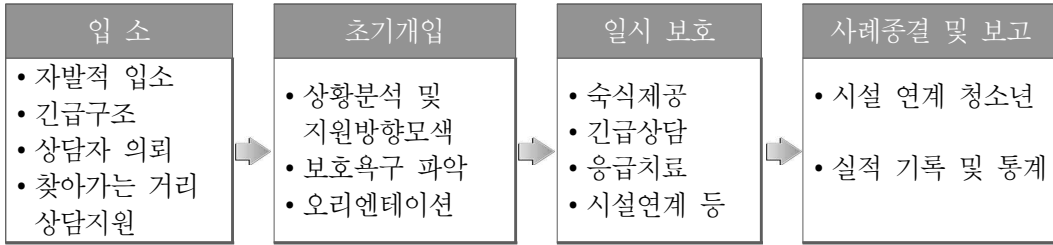
○ 입소청소년 연계

- 경찰 연계 : 요보호 대상자 인수·인계확인서에 입소청소년 기본정보, 입소 의뢰사유, 인계자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 개인정보 취득시 별표 4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징구
- 담당 팀 연계 : 입소청소년의 익일 일정 확인 및 아침 기상시간 등 체크
- 담당 팀 외 당직자 연계 시 : 입소청소년의 입소시간 및 입소사유 등 체크

서비스는 청소년 보호법에 준거하여 19세 미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청소년 대상으로 함. 단,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예외상황을 인정

16) 청소년쉼터 등 마땅한 연계시설을 찾지 못하였거나, 심리치료·의료지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일시보호소 서비스 흐름도 ■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 운영 방향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
- (운영목적)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해 청소년전화 1388를 운영해야 함

○ 시·도 운영 특이사항

-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며, 초기개입, 구조, 일시 보호 등을 실시해야 함
- 상담 취약시간대(주말 및 야간) 적정 전문 상담인력 배치¹⁷⁾
 - * 자원봉사자 활용 전화상담 가급적 지양하고, 전화상담 전담인력 혹은 직원의 교대근무로 주말 및 야간 상담인력 공백 없도록 필수 배치
- 시·군·구 대상으로 전화상담 컨설팅 실시

○ 인력관리 및 교육

- (인력관리) 센터 직원 소진 방지 및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상담 전담인력 선발
 - *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전담인력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 센터는 최소 4명 이상, 시·군·구 센터는 최소 1명 이상 전화상담 인력 배치 운영 권고
- (교육) 전화상담 친절도 관리를 위해 각 센터별 전화상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17) 자원봉사자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적정 자격을 갖춘 경우 센터 상담원 보조업무 수행 등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또한 각 센터는 익월 주중 야간·주말 전화상담 당직자 편성 후 각 지자체 제출, 각 지자체는 24시간 상담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청소년전화 1388 상담유형별 서비스 제공

- (원칙) 청소년전화 1388 이용자의 문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 종합상담전화로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고 일반상담, 위기상담, 신고전화 등의 분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야간 전화상담의 경우, 위기상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개입
 - ① 일반상담 : 단회상담 후 종결, 대면상담을 위한 접수면접으로의 연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 ② 위기상담 : 위기 정도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에서부터 긴급구조 및 현장케어 까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 ③ 신고전화 : 자치단체 및 검찰·경찰 등에서 실질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

○ 악성내담자 대응조치방안 마련

- 성희롱·폭언 등 악성내담자로부터 상담사의 인권보호
- 대응조치방안

<법적 대응 전 조치>

- 악성내담 행위* 중지 경고 및 권리보호를 위한 녹음시스템 도입
 - * 성희롱, 폭언·욕설, 협박·모욕, 장난전화, 거짓신고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악성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제도 시행
 - * 성희롱은 2차례, 욕설·폭언 등은 3차례 경고하고 바로 상담 중단
- 성희롱의 경우 남성상담사 전담 등 악성내담자부터 분리, 심리치료 지원 및 복무 편의 조치 지원 등 자체 보호조치 규정* 마련·운영

<법적 대응 조치>

- ① 1단계 : 일반상담사
 - 성희롱, 폭언 등 악성내담자에게 녹취 및 법적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후, 통화 먼저 종료
 - 상담일지, CYS-Net 등에 사전검토를 통해 악성내담자로 등록
- ② 2단계 : 일반상담사
 - 통화시작 전 기계음 또는 구두로 녹취 및 법적조치 고지멘트 송출
 - 상담 중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법적조치 구두경고

③ 3단계 : 법적 조치 이행(전담 부서)

- 성희롱은 1회 통화 이상, 폭언·욕설 등은 3회 통화 이상시 조치 대상
- 전담 지정부서에서 상담내용 검토*한 후, 법적조치 여부 결정
 - * 내담자의 발언 수위·빈도 등 상담내용의 악성 수준 및 의도성·상습성 여부 등

○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 상반기 및 하반기 연2회 청소년전화 1388 운영실태 모니터링 실시
 - * 청소년전화 1388 수신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전화 수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18년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우수·부진 센터 선정

○ (우수·부진)

- 청소년전화 1388 친절도*, 실적건수(청소년규모 등 반영), 전년대비 개선수준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및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점수 상·하위 5% 이내 (시·도 1개소, 시·군·구 10개 내외)
 - * 친절도 평가내용 : 최초수신상태, 상담진행 및 응대태도, 끝맺음
- 각 센터 친절도 점수는 상·하반기 모니터링 친절도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 유의사항

- 신규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등 상담 수행 가능하도록 준비철저
 - * 개소 이전 인력채용, 사무공간·기기 배치계획 추진 및 개소 이후 인력부족으로 전화상담 미 실시 등 서비스 공백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 별 자원 투입 노력 강화
- 상담 수요자의 혼선방지, 전국 단위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전국 단위 동일한 통화연결음(여성가족부 기 배포) 활용
 - * 청소년전화 1388 통화연결음은 'CYS-Net 종합정보망'에서 다운받아 활용 가능
-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착신 전환 운영
 - * 원활한 콜응대를 위해 야간시간, 회선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 등 시·도로 착신전환
 - * 단, 시·군·구에서의 시·도 등으로의 착신전환 횟수·사유 등도 모니터링 예정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전화 착신일 경우 모니터링 시 감점 처리)

다.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1) 위기청소년 상담

-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일정소득 이하¹⁸⁾ 가족 및 보호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 여비 등 실비 지급할 수 있음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업중단숙려 상담 의무화 및 전국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상담복지센터(CYS-Net)로 숙려상담 요청 시 적극 개입으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제고 지원
- * 숙려상담운영 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조

○ 상담 시 행정사항

- 청소년과 보호자의 긴급구조에 따른 초기개입, 전문가 심층상담 및 위기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청소년동반자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 및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¹⁹⁾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담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아야 함
- *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는 별표 4의 양식을 참고하여 활용

2)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 일시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이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단, 시·도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의료(병원) 연계기관, 여성가족부 등의 폭력피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활용 가능한 자원²⁰⁾을 적극 활용하여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함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함
 19)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20)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감염성병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등에 따른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대상 : 치료 등에 따른 의료비, 교통비, 식비 등
 - 기타 보호서비스, 심리평가, 전문상담, 의료·법률·각종 권리구제 서비스, 귀가 혹은 보호시설 연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구 분	지급 기준(안)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300,000원 이내 ※ 무료의료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최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 탑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차표 등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교통비 지급대장' 등에 기재하여 현금 지급 가능
식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7,000원 이내 / 1회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응급 지원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기록·관리
 - * 개인정보 취득시 별표 4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징구
- 지원 연계시설 접촉 결과(일시, 시설명, 연락처, 담당자, 접촉 내용) 및 심리치료·의료지원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조치결과 등을 기록 유지
- 일시보호시설 담당 팀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센터 내 실행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간 지원실적은 센터 운영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 * 일시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무자 매뉴얼 참고

3)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 (가출 청소년) 의식주 제공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쉼터」 연계
- (인터넷 중독 청소년) 전문상담 제공 및 치유학교 연계
- (고(高)위기 청소년) 「청소년동반자」 연계
-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심층·집단 상담 및 또래상담 연계

- (기타) 학업중단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대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특별지원」으로 연계

* 청소년사업안내의 개별 사업 부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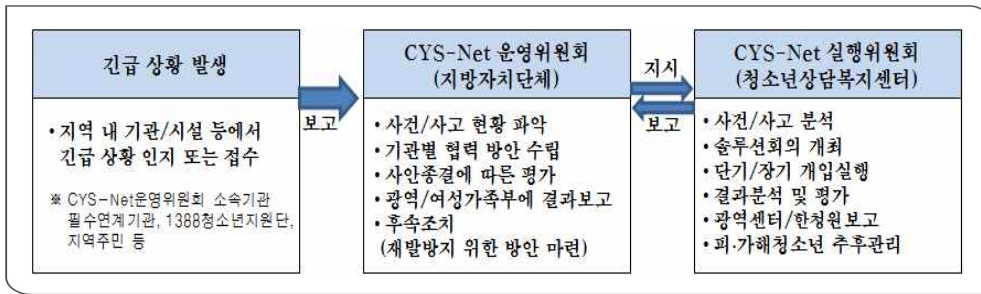
라. 지역사회내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1) 긴급대응 체계 필요성

-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 내 긴급대응 체계 마련

-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이나 주요 청소년위기사건이 지역사회 현안문제로 확대시 협의체(운영위, 실행위) 작동 의무화

* 필요시 여성가족부가 긴급대응 체계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



2)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 (긴급상황접수, 사례발굴) 긴급상황 발생 시, 지자체 및 CYS-Net 운영기관과 최초 인지한 기관/시설 담당자가 초동대응

※ 경찰(수사) 및 학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조사)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조사결과 전까지 적법하게 개입
 ※ 국가적인 재난 또는 사고 발생시 종합대책본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하에 지원에 참여

- (CYS-Net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CYS-Net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협력방안 논의

- (CYS-Net 실행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건, 사고를 분석하여 솔루션회의 개최, 단기/장기 개입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

-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솔루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문제해결 전담조직 운영

- 광역 CYS-Net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사회 긴급지원팀(가칭 CRT-Crisis Response Team)을 구성하여 사회적·심리적 외상 전문 대응 체제 구축

※ 사건조사 초기 단계부터 폭력 피해 청소년·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가 되도록 적극 대응 요청

4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

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및 상담 등을 목적으로 광역 시·도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되었으며, 관계기관(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이 합동팀을 편성하여 운영
- 주요업무
 - 학교폭력 신고 접수·상담, 유관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 근무인원 : 총 186명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1	경기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186	1	25	12	9	10	9	9	9	18	13	8	8	9	8	8	9	13	8
여가부	34	0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교육부	90	0	12	6	5	5	4	4	4	10	6	3	4	4	3	4	5	7	4
경찰청	62	1	10	4	2	3	3	3	3	6	5	3	2	3	3	2	2	4	3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고용 및 운영관리
- 전문 상담원의 채용 및 관리는 본 지침 외 별도로 안내

나.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학교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폭력 전담 인력 배치 지원
- 주요업무
 -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사후 조치
 - * 업무연계는 각 센터 내 운영·실무협의회 및 상호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확보
- 배치현황

■ 2018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 ■

운 영 지 역	
대구광역시	대구시, 동구, 수성구
인천광역시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경기도	김포시, 안성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 홍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강진군, 곡성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사천시, 창원시, 남해군, 창원군

※ 전문상담원 채용 및 관리 : 보수기준은 연 26,385천원(세전, 고용관련 보험 포함)으로 하고,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선발·관리 기준 적용

5 CYS-Net 운영 인력 관리

- CYS-Net 인력 자격기준, 인사관리, 교육,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준을 준용함
 - (시·도 CYS-Net 인력) 6명
 - (시·군·구 CYS-Net 인력) 2~3명
- 단, 시·도센터 일시보호소 종사자는 아래와 같이 운영함
 - (운영원칙) 2인이 교대로 1주일(3일/4일) 동안 근무²¹⁾
 - (운영시간) 평일은 21:00~익일 09:00, 토요일은 17:00~익일 09:00, 휴일은 09:00~익일 09:00
 - (업무) 긴급구조 및 야간 전화상담, 입소청소년관리, 일시보호소 시설관리 및 운영
 - ① 출근 시 입소청소년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익일 일정 등 확인 및 의류, 침구류의 세탁 상태 등 확인·정리
 - ② 퇴근 시 담당자 및 팀장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시설 보안점검 및 기타 컴퓨터, 프린터, TV 전원 등 확인
- 사회복지무요원
 - (주요역할)
 - 일시보호소 이용청소년 생활지도 보조, 일시보호소 시설관리 지원
 - 위기청소년 현장 긴급구조 지원 보조, 긴급구조 대상 청소년 보호·연계 지원
 - 심야 청소년전화 1388 초기 응대 지원 (※전문상담이 아님에 유의)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보조
 - (복무) 8시간 근무, 3교대 원칙으로 하고, 지역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근무지시에 따름
 - (휴일 및 휴가) 병무청의 사회복지무요원 근무규정을 준용함
 - 기타 복무관련사항은 병무청의 사회복지무요원 근무규정 등을 준용함

21) 토요일, 휴일 근무시간은 일시보호소 24시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함

- (배정절차) 익년도 수요조사(2~3월) → 배정요청(3.31한, 복무기관) → 배정인원 결정(4.30한, 지방병무청) → 복무기관 통보(5.20한, 지방병무청)
- * 병무청 수요 제출 전 우리부와 협의 필요하며, 미 협의 시 해당 지자체 예산 지원 제외함.
또한, 익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함(지자체별 지원 인원은 별도 통보함)

6 CY5-Net 사례 및 실적 관리

가. 종합정보망 등록 자료의 보안관리 철저

-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개인정보 유지 및 관리 철저
- 기타 종합정보망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나. 실적의 상시적 등록 관리

- 국가 통계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지원실적 및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입력
 - 불성실한 실적 입력이나 허위실적 등록 등의 사례 발생시 사업비 예산 삭감 등 엄중 조치
 - CY5-Net 실무자용 사업운영 방법은 「CY5-Net 종합정보망 운영매뉴얼」 참조
 - 청소년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용 시스템 활용 방법은 「CY5-Net 종합 전산망 지자체 담당자용 매뉴얼²²⁾」 적극 활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과 CY5-Net 실적을 별도 분리하여 입력할 것
 - * CY5-Net 정보망에 실적 입력 관련 세부내용 및 성과지표는 별도 통보

다. 사업실적 보고체계 구축 및 실적관리 철저

- CY5-Net 종합정보망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사업실적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분기별 보고 정례화 **【서식 9】**
 - (보고절차)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구 → 시·도 취합 및 분석

22) 지자체 담당자용 매뉴얼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853(2013.3.24)호 「CY5-Net 종합전산망 통계 시스템 지자체 담당자 매뉴얼 배부」 참조

- CYS-Net 사례관리 수 등 사업실적의 정확성, 공정성을 기하고 지자체별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관리 철저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익월 5일까지 월별 실적입력을 마무리할것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매월 추진실적과 CYS-Net 운영 실적을 소정양식에 의거 센터가 실적입력을 마감(익월 5일)한 이후 2일 이내(공휴일의 경우 당해일이 지난 첫 근무일)에 여성가족부에 보고

7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보조금 배정(교부) 및 집행

- 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신청
 - 시·도지사는 해당년도 【서식5】 , 【서식6】 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
 - * 지방이양사업인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은 교부신청 불필요
-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완료
-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당해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 사업별 「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양식 참고
 - 시·도 지사는 보조금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기타
 - 시·도별 또는 사업시행기관별 상반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

- 예산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비치)

나. 예산 편성

1) CYS-Net 예산(청소년육성기금)

- 시·도별 예산범위 안에서 시·군·구 센터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 기준단가 : 시·도 382.5백만원, 시·군·구 92.2백만원(국고보조율 50%)
- CYS-Net 예산 및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을 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CYS-Net 예산으로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 지자체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YS-Net 지방비 부담분(50%)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국비 지원 CYS-Net 예산(총액 대비 지방비 부담분 50%)을 초과하는 예산은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통장계좌, 회계, 정산 등 분리 필요)
 - * 단, CYS-Net 인력 인건비 추가 확보 등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지방비를 증액 편성한 경우, 통장계좌, 회계, 정산 등을 분리하지 않아도 됨
- 정규직 전환 지원 수당(대상 : 직영센터)
 - 정규직 전환 예산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을 경우 집행
 - 정규직 전환 지원 수당 항목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 전환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 예산 집행 불가(반납조치)

2) 지방청소년상담사업(지방이양사업)

- 지방비로 추진
-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편성하여야 함
-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예산 축소 또는 미반영시 CYS-Net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만 CYS-Net 사업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음

3) CYS-Net 사업과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의 구분

- CYS-Net 구축예산 지원(시·도 및 시·군·구)
- CYS-Net 사업(A) : 국비와 지방비 매칭(보조율 각 50%)
- CYS-Net 공통사업(B) : 국비와 지방비 매칭(보조율 각 50%), 지자체 자체예산
- 지방청소년상담사업(C) : 지자체 자체예산(지방비 100%)

* CYS-Net 공통사업(B)는 CYS-Net 사업(A)과 지방청소년상담사업(C) 둘다의 공통항목임

☞ CYS-Net 사업(A) + CYS-Net 공통사업(B)

☞ 지방청소년상담사업(C) + CYS-Net 공통사업(B)

▣ CYS-Net 사업과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예산집행 항목 구분 ▣

CYS-Net 사업(A)	공통사업(B)	지방청소년상담사업(C)
<p><시·도, 시·군·구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연계사업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서비스로의 연계 ○ 긴급구조지원(시·군·구는 주간만) ○ 인건비 <p>< 시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소 운영 - 일시보호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 ○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수수료 등 기타 수용비 ○ 차량비 * CYS-Net 사업 관련 및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 운영비는 CYS-Net 사업비로 지출 가능 ○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 기타 사무실 운영비

* 청소년동반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타 사업은 CYS-Net 사업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별로 예산을 구분 집행해야 함

4) CYS-Net 예산 편성 기준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주요항목	내 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S-Net 예산으로 시·도는 6명, 시·군·구는 2~3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장의 인건비는 반드시 지방상담사업비로 집행 ○ 청소년 인구 수 및 유해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수요 발생시 지방상담 사업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 적정 운영 ○ 직원 출산 휴가 및 기존인력의 퇴직 등에 따른 공석 발생 시 조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선발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세부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는 CYS-Net 지원예산*의 25% 이상, 시·군·구는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 센터 및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예산은 제외 ○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사업 - 청소년전화 1388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센터의 청소년전화 1388 통화수요가 높으므로 민원 예방 및 효율적 운영 위해 전화상담 전담요원 1명 이상 채용 가능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 의료·법률자문·취업·자립지원서비스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 지역연계협력사업 :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CYS-Net 구축지원 사업 ○ 시·도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상담복지센터 지원 - 일시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센터 내 설치·운영 중인 ‘일시보호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센터 직원들의 야간 당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1명 이상의 생활지도원 채용 가능 *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식비, 생필품비 등이 지원인원 대비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구조요원)의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 대책 마련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종사자 직무교육 참여 등에 따른 출장비(여비) 등 ○ 사회복지무요원 중식비(1인당 1일 6천원)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회복지무요원의 인건비 및 식비가 지자체 예산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다. 이용료 등 수익금의 처리

○ 이용료

- CYS-Net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전에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실비 차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 납부는 제외하여야 함
- 이용료 징수는 외부기관 이용료(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 교재·교구비 등 실비 측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에 한함
- 징수된 이용료는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타 수익금

- 교육·상담 과정 운영 중에 발생하는 수익금(판매, 공연 등)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라. CYS-Net 예산 집행 원칙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시, 제출 또는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의무를 다해야 함
- CYS-Net 사업예산은 CYS-Net 사업비 및 공통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청소년상담사업 내역은 「지방상담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의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사업 간의 변경은 금함
- 시·도 CYS-Net 사업 중 주요 항목 간(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가능 (*사업비의 예산감액 조정은 불가능/시·도 25% 이상, 시·군·구 15% 이상)

- 시·군·구 CYS-Net 사업 중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 권한 위임 시 사업비 예산감액 조정 불가능 명시(시·군·구 15% 이상)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되, CYS-Net 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연계기관의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에 한정
 - *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의 후원기관 개발을 통해 지원

8

회계처리 (※ 이하 청소년사회안전망 국고보조사업 공통)

가. 사업별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며,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
- CYS-Net 사업,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 등 개별 사업별로 1개씩 관리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나.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 발급 사용
 - 「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는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를 사용

- 예산사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절대 불가하며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나 단말기 사용 영수증 처리만 가능
 - 「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다.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집행 내역을 육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 예시) 1개월 간의 주유비를 선결제 또는 월말 정산하는 형태
 - * 단, 일시보호소 식비 결제 시 식비지원현황 및 입퇴소 관리대장 등 첨부하여 20만원 내외에서 가능(1인당 7천원 내외 준수)
- 예산집행 방법은 운영기관명의 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세금 계산서 발행, 급여 및 강의수당의 경우 계좌 입금 등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전표, 세금 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보조금 집행 시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11. 30.이후 변경승인 불가)

라. 각종 수당 등의 지급

- 강사료,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책정 및 집행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

-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 찾아가는 거리청소년 지원, 교육과정 등 교육을 주관하는 센터의 직원이 강사로 참여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
 - 특히, 원고료·강사수당은 기존 사용 원고료를 수정한 강의 원고 및 같은 교육 내용으로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등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출장여비는 관내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별표3,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의 기준 적용
-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 CYS-Net 예산(국비+지방비) 및 지방상담사업비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내에서 집행
 -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 반드시 지방상담사업비로 집행,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아래 사항 준용)
- 월 500,000원(센터장에 한하며, 센터장 직책수당이 아님)
 - 센터장 업무추진비는 축의금, 부의금, 개인자격 모임 회비, 자동차 주유 등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
 - 사업 운영 또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사업목적에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 지출증빙 서류첨부 및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9조(감독)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집행, 사업성과 추진 관련 등 관할 CYS-Net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지도·감독 실시 필요
 - 연계지원 목표인원 및 성과지표에 대해 분기별 지원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 평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해야 함
- CYS-Net 운영의 평가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준을 준용함
 - 센터 평가·현장점검 시 CYS-Net 운영이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평가한 경우 CYS-Net 운영 평가·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CYS-Net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여성가족부에 공문 송부 요망

【참고 1】 시·도(시·군·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예시)

【참고 2】 CYS-Net 종합정보망 이용 및 실적 입력 안내

【참고 3】 청소년전화 1388 회선 업무처리 체계

【서식 1】 「서비스 연계 동의서」

【서식 2】 「CYS-Net 운영계획」

【서식 3】 「CYS-Net 연계기관 현황」

【서식 4】 「1388 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축 현황」

【서식 5】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사업계획서」

【서식 7】 「국고보조금 정산서」

【서식 8】 「사업결과보고서」

【서식 9】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10】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서식1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서식1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1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서식1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15】 직원증(동반자증) 양식

【별표 1】 가출청소년 발견·지원 비상연락망

【별표 2】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별표 3】 출장여비 지급 기준

【별표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예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시·군·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000 대학교 교수/학부모 대표 등)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급 이상)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실적관리 원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모든 실적은 “CYS-Net 종합정보망 (<http://counselingsystem.or.kr>)”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나. 등록

- 신규 개소 센터인 경우 해당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식정보TF팀(051-662-3141)으로 신청해서 사용자 발급 ID와 비밀번호를 받아야함
- 센터관리자는 아이디 발급시 상담원의 직급 별 사용권한에 대한 명시를 참고하여 발급하여야 함
 - ※ 직급별 사용권한은 “CYS-Net 종합정보망 운영매뉴얼” 책자 참조
- 상담자 ID는 소속센터의 센터관리자에게 발급받아야 함

다. 실적 입력

1) 개인상담신청서 작성

- CYS-Net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접속 “CYS-Net → 개별지원 → 개인상담신청서”
- 개인상담신청서 작성시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록한다.
- 상담복지센터에 최초 방문일 경우만 작성하며, 기존에 개인상담신청서가 있는 경우 사례등록관리에서 사례등록 후 상담(지원)회기보고를 진행한다.
- 개인상담신청서 정보는 최소권한자를 제외한 모든 상담복지센터 직원에게 자료가 공유된다. 그러나 개인사례 및 상담(지원) 내용은 공유되지 않는다.
 - ※ 개인상담신청서는 한 사람당 한번만 작성하며, 실적과는 무관하다.

2) 사례등록 관리

- 내담자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면 개인상담신청서 작성 후 사례 등록을 한다.
- 주호소문제 및 내담자의 상황을 기록한다.
 - 주호소문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주된 문제를 하나 선택함

- 내담자의 상태라 함은 내담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함
(예 : 가출, 학업중단, 성폭력 피해자 등)
- 내담자의 상태는 중복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함
- 의뢰구분을 작성하도록 한다.
 - 연계된 경로에 대해 기관 및 개인을 선택함
- 위기 스크리닝 점수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한다.
 - 점수를 통해 내담자의 위기수준을 확인함
- 사례등록할 때 CYS-Net 서비스 효과성평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지원사업 선택 중 CYS-Net 서비스평가 사업으로 선택하여 CYS-Net 서비스 효과성 사전평가 설문을 반드시 실시하여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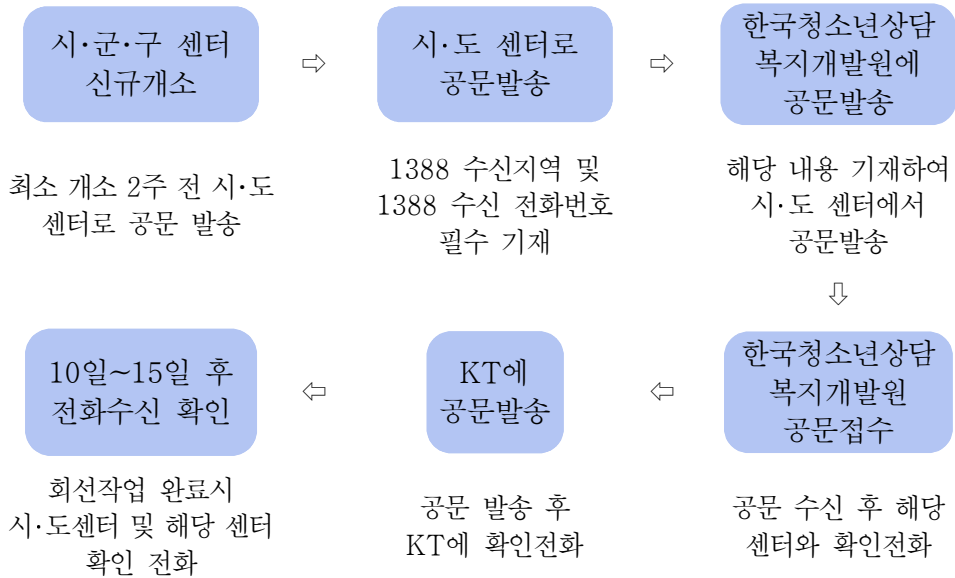
3) 상담(지원) 회기 보고

-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력하는 메뉴이다.
 -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지원서비스 등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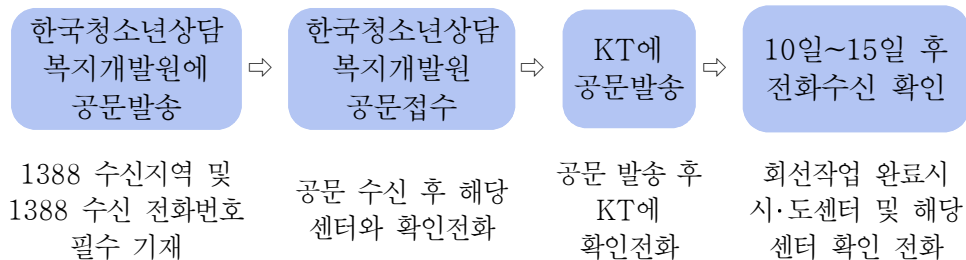
4) 개입종결 보고

- 개입 종결보고는 상담 종료시 주 호소문제에 대한 종결 상태를 입력한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개인상담 접수시 실시했던 질문지의 CYS-Net 서비스 효과성 평가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 종결보고 시 지원사업 선택 중 CYS-Net 서비스 평가 사업으로 선택하여 사후 평가 설문을 실시하여 입력한다.
- 3개월 동안 개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조기 종결 처리한다.
 - 3개월 동안 개입기록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종결 처리됨
 - ※ 기타 세부사항은 “CYS-Net 종합정보망 운영매뉴얼” 책자 참조

○ 시·군·구 센터 신규회선 관리



○ 시·도 및 시·군·구 센터 변경회선 관리



필수 연계기관 및 연계서비스 내용

1. 경찰관서
학교폭력(폭행, 모욕, 따돌림 등), 성폭력(강간, 추행 등) 등 범죄피해 신고접수 및 수사
2. 학교, 교육청
학교폭력긴급전화 117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상담실이나 교육청에서는 Wee클래스, Wee스쿨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4. 지방 고용노동청 및 지청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장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지원
5. 국공립의료원 및 보건소(정신보건센터)
6.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0000년 CYS-Net 운영계획

1. 추진계획

1) 개요

2) 연계기관 등 인프라 구축

CYS-Net 조례 제정

○ 제정여부 :

* 미제정된 경우 제정 계획 작성

○ 제정일자 :

연계기관 구성 계획

○ 연계기관 개요

구분	기관 수
필수연계기관	
기타협력기관	

* **【서식3】** 「지역별 CYS-Net 연계기관 현황」을 첨부하여 보고

○ 향후 MOU체결 등 통한 연계기관 확충 계획 등

지원서비스 연계 계획

3)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안

소속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주기, 회의 시점, 회의별 주요 협의사항 등

4)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실행위원회 구성안

소속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실행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주기, 회의 시점, 회의별 주요 협의사항 등

5) 1388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1388 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성안

구분	기관 수
1388 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 【서식4】 「1388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축 현황」을 첨부하여 보고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계획

학교지원단 운영계획

2.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애로사항) CYS-Net 구축과 관련한 지자체 연계 추진 시 애로점 및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지자체 여건 등
 - (예시) 필수연계기관 중 당해 지자체에는 국·공립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계할 수 없는 상황
- (개선방안) 지자체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CYS-Net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방안
 - (예시) 민간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의 OO병원과 지자체간 협약(MOU)을 체결하여 건강검진비용 감면 등 협력할 계획
 - (예시) 필수연계기관의 연계강화 또는 상호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감면 협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3. 추진일정

[서식 3]

CYS-Net 연계기관 현황

구 분	기관유형	참여 여부	해당 지역 참여 기관명	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비고
필수 연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소년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기타 협력 기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1366				
	청소년성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보호관찰소				
	법원				
기타					

※ 기관유형은 변경 불가능함. 필수연계기관 분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며, 협력기관 분류는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2. CYS_Net 구성” 참조

[서식 4]

1388 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축 현황

구 분		해당 지역 참여기관명	참여자명	비고	
1388 청소년 지원단	발견·구조				
	의료·법률				
	복지				
	상담·멘토				
학교지원단					



[서식 5]

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신청기관	시도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총액	일금 _____ 천원(₩ _____)						
총사업비 (단위:천원)	지역명	총사업비				비고	
		계	국고 (50%)	지방비(50%)			
	계			시·도	시·군·구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12개월) ○ 주요내용 : 						
<p>“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자 : 시·도지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장관 귀하</p>							
[붙임]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서식 6]

0000년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사업지역 현황

○ 인구규모·면적 및 지역특성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다.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조

○ 지자체 조례 등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 CYS-Net 연계서비스 제공 주안점, 신규 서비스 개발 등

○ 기타 특성화 사업 등

2. 사업내용 * CYS-Net 운영사업 외의 사업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각 센터가 추진하는 CYS-Net 관련 사업들을 기재

* 구체적 사업분야에 따라 사업개요(목적, 기간, 대상 등), 사업내용, 소요예산(세부 산출근거)
등을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작성

가.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기대효과

나. 사업명

3. 소요예산 총괄

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CYS-Net										

나.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CYS-Net 운영		자체부담*	비고
		국비(50%)	지방비(50%)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 외에 지자체의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사업예산임

다. CYS-Net 운영 예산 항목별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CYS-Net 운영 예산 총액	세부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라.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확보현황

(단위 : 천원)

지역명	소계	지방비	예산주요내역
		(반드시 기재)	인건비 : 사업비 : 운영비 :

4. 사업평가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적시)

가.

나.

5. 사업홍보계획

* 사업홍보물 제작 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명기)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연번	직위*	성명	자격요건 ※ 청소년상담사 필수 기재	채용일자	호봉	보수 (단위 :천원)	비고
1	센터장	○○○				총액기준	
2							

* 직위는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 생활지도직원으로 분류

* '비고'란에 CYS-Net 사업 인력 여부 표시 (Y/N)

2. 청소년동반자

연번	구분	성명	자격요건 ※ 청소년상담사 필수 기재	채용일자	보수 (단위 :천원)	비고
1	전일제 /시간제					수석 동반자인 경우 표기
2						

3. 기타 프로그램 사업(인터넷중독예방 등) 인력

사업명	성명	자격요건 ※ 청소년상담사 필수 기재	채용일자	보수 (단위 :천원)	비고
	○○○			총액기준	

[서식 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 시·도명

2. 소요경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액	CYS-Net 운영		자체부담*	비고
		국비(50%)	지방비(50%)		
CYS-Net 구축 운영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총계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50%) 외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지자체 사업예산임.
자체부담금 총액만 기재, 세부사항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

3.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CYS-Net 운영)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CYS-Net 구축 운영														

* 반납금액은 국비 불용액과 국비에 대한 결산이자 발생액 합계액임

4. 집행잔액(불용액) 사유(세부적으로 작성) :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8]

0000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사업 결과 보고서

1. 사업실적

가. 총 평

- **CYS-Net**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인원, 서비스별 제공 건수 등 위기 청소년 지원 특징
 - 기타 지역 청소년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서비스의 효과성, 체계성 등에 대한 평가, 보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서술적으로 기재

나. 사업 실적 총괄표

1) **CYS-Net** 사업 운영

- **CYS-Net**을 통한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 (단위 : 명)

구분		소계	남	여
0000년 계(전년도)				
0000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			

- 서비스별 제공 내용 (단위 : 건)

구분	소계	상담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0000년 계 (전년도)									
0000 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								

○ 호소문제 유형별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정보 (범죄 등)	활동	기타
0000년 계 (전년도)													
0000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												

○ 청소년전화 1388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정보 (범죄 등)	활동	기타
0000년 계 (전년도)													
0000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												

○ CYS-Net 수혜청소년 만족도

(12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전반적 만족도	차원별 만족도		합계
		상담자 전문성	상담자 대응성	
0000년 (전년도)				
0000년 (당해년도)				

○ CYS-Net 서비스효과성(서비스이용 전후 위기 개선율)

(12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전체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전체	또래 관계	부모 관계	교사 관계	전체	가정 적응	학교 적응	전체	
사전												
사후												
개선율												

※ (서비스 이용 전 위기수준 - 서비스 이용 후 위기수준)의 변화율 측정,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효과

○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

개최일시	참석위원	주요논의사항

○ CYS-Net 실행위원회 운영

개최일시	참석위원	주요논의사항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개최일시	참석위원	주요논의사항

○ 학교지원단 등 기타 기관 간 연계 운영

-

○ 홍보실적(언론보도 현황 등)

-

-

보도일자	언론매체명	주요보도내용

2. 예산 집행(상세내역)

가.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총액 (자체부담 제외) (A)	집행액			자체부담*	집행률 (B/A)
		합계(B)	국비 (50%)	지방비 (50%)		
CYS-Net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총계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 외에 지자체의 지방상당 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사업예산임

나. 세부 집행내역

1) 국비(국고보조금)

구분	국고보조금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2) 지방비

구분	지방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3) 자체부담

구분	자체부담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3.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잘된 점(우수사례, 사업성과 대표적인 사례로 2~3건)

-

○ 미흡한 점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 및 발전방안

-

○ 주요 활동 사진자료 등

0/4 분기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실적 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총액 (교부액 누계) (A)	집행액			자체부담*	집행률 (B/A)
		합계(B)	국 비	지방비		
CYS-Net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총 계						

* 자체부담금은 보조율 외에 지자체의 지방상당 사업비, 추가 지방비 등의 사업예산임

2. 사업추진 실적

○ CYS-Net을 통한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

(단위 : 명)

구 분	소 계	여 성	남 성
○ 분기			
합 계			

○ 서비스별 제공 내용

(단위 : 건)

구분	소계	상담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 분기									
합 계									



○ 호소문제 유형별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

(단위 : 명)

구분	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정보 (법률 등)	활동	기타
남													
여													
합계													

○ 청소년 전화 1388 상담 현황

지역명	소 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정보 (법률 등)	활동	기타
○분기													
합 계													

○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

개최일시	참석위원수	주요논의사항

○ CYS-Net 실행위원회 운영

개최일시	참석위원수	주요논의사항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개최일시	참석위원수	주요논의사항

○ 학교지원단 등 기타 기관 간 연계 운영

[서식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1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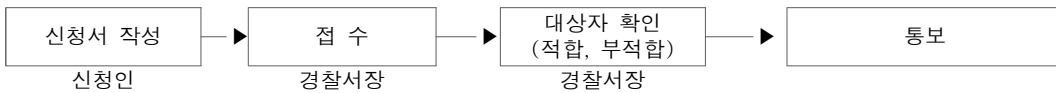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제출서류를 생략합니다.
3.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5
청소년복지영

[서식 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주 소 (전화번호 :)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운영하려는 자용 조회용도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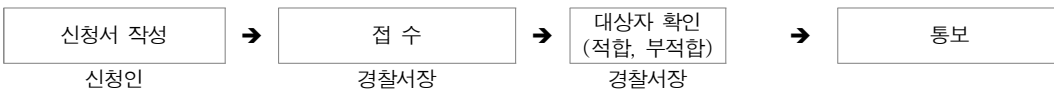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5
청소년복지영

[서식 1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 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13]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2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
	주 소		
	취업(예정) 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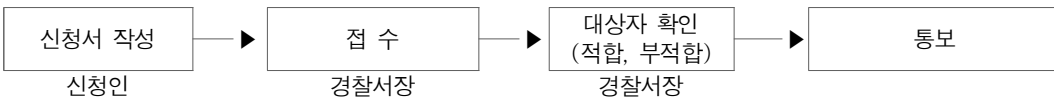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5

 청소년복지팀
 담당자

[서식 14]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9.2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15]

직원증(또는 동반자증)(양식)

(앞)

(뒤)

<p>직원증(동반자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p>사진(반명함판) 가로×세로=3×4</p></div> <p>○○○ ← 성명</p> <p>○○청소년상담복지센터</p>	<p>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획운영팀</p> <p>직위/직급 소장 or 팀장,,,</p> <p>성명 ○○○</p> <p>생년월일 ○○○○. ○○. ○○.</p> <p>○○○○. ○○. ○○. ← 발급일</p> <p>○○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인)</p> <p>(☎00-000-0000)대표 행정전화번호 명기</p>
--	--



1. 비상연락망 구비의 필요성

- 가출청소년 야간 긴급구조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보호소가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1명이 수행하고 있어 인력·인프라의 부족
- 따라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긴급구조에 출동한 후 전담인력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심야시간에 긴급구조가 어려울 경우,
 -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이 있는 인근 지역의 긴급구조가 가능한 청소년 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지원을 요청하여 긴급구조를 지원 요청

2. 관계기관의 종류 및 역할

관계기관	주요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시·도의 상담복지센터가 24시간 긴급구조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청소년 의뢰 시 긴급구조 출동 및 일시보호 - 직접 출동하지 못할 경우 경찰이나 1388청소년지원단 택시를 이용하여 긴급구조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야간에 일시보호를 지원할 경우 익일 오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출청소년을 인도받음
청소년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시간대 원거리의 가출청소년 긴급구조가 의뢰될 경우 경찰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인계받음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에서 가출청소년이 발생하였을 때 상담복지센터가 원거리로 인하여 즉시 긴급구조를 수행하지 못할 때, 경찰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인계받음 ※ 아동복지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치료보호시설

3. 지역별 가출청소년 발견·지원 비상연락망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번	지자체명	센터명	주소	상담전화	Fax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02-2274-1388	02-2285-1315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동성로 20, 2층	051-804-5010	051-804-5056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중앙대로81길 66-5(중로1가 83-1)	053-659-6240	053-659-6249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박문로1(송림동 103-29) 가톨릭청소년센터 1층	032-429-0394	032-721-2320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 상무자유로 173 4-5층	062-226-8181	062-232-2003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대전천동로 508 6층	042-252-6577	042-257-2077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학성로 76(성남동) 알리안츠빌딩 3층	052-1388	052-211-2979
8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5층)	031-248-1318	031-245-2309
9	강원도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춘천시 소양로 167, 2층	033-256-9803	033-241-8181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043-258-2000	043-258-3422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	041-554-2130	041-556-8704
12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6-6291	063-273-1413
13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여진누리길 30	061-280-9001	061-208-9080
14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1388	054-853-3014
15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3층	055-277-1318	055-711-1397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시 구남로7길 4, 2층	064-759-9951	064-759-9953

○ 청소년쉼터는 cyber 1388홈페이지의 “청소년쉼터” 참조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강사료를 지급하며, 센터 및 지자체 예산 내에서 운영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 원고료 지급기준

-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강사료와 병급 가능)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에서(45매까지) 지급 가능
 -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대행사, 연구용역사업 및 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사례비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유명강사 등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내부기안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 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시 (매시간)	200,000원	
일반 1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록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시 (매시간)	100,000원	
일반 2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시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과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3.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1.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보고서 용량은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심사위원	1일, 건	3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이상 심사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1.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번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출요청시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1.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1.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100,000원	1.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 초과시 (1일 1회)	50,000원	
행정조사	1회	200,000원	1.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4.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20,000원)

별표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장여비 지급 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하며, 센터 및 지자체 예산 내에서 운영>

※ 기타 규정하지 않고 있는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1.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

- 실제 출장내용에 따라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인 10,000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인 20,000원 지급하며, 업무용 차량 이용시에는 1인 10,000원 감액 지급
-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관내 출장비 시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비로 지급
-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도서지역 등 일반 대중교통 외 운임(선박 등)이 발생할 경우, 실비 처리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관내 출장여비 지급 예시 ></p> <p>1. 업무용 차량 이용시 1인 10,000원 감액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미만, 업무용 차량 이용 출장시 : 출장비 미지급 - 4시간 이상, 업무용 차량 이용 출장시 : 출장비 10,000원 지급 <p>2.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실비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미만 : 10,000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 20,000원 한도 내 실비 지급

2. 관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에 준해 지급
- 여비 지급 기준표(제2호)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정액)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경우, 실 지급된 운임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급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
 -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자가용 이용시 운임을 지급 시 첨부 증빙자료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출장 이행사실 증거 서류
 -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

<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5.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자가용 이용시 운임의 산정 >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계산
 - *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거리계산방법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
 - *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을 적용
 - 연비
 - * 2016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 반영('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1.57	12.12	8.52

- 증빙자료 제출의무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 사실 증거서류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 미지급

4.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 각각 제출.

*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